

교회저작권은 생활입니다

교회신뢰회복시리즈 2
교회저작권가이드북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는 교회의 윤리성과 공공성 회복을 통해 성도와 한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섬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신뢰성 증진을 돕기 위한 교회신뢰지표 개발 및 컨설팅, 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임파워먼트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회와 성도가 우리사회의 신뢰성 증진을 주도해 나가도록 섬기고자 합니다.

교회신뢰회복시리즈는 임파워먼트의 관점에서 교회를 섬기는 도구로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에서 발간하는 도서입니다.



- 01 | **한국교회신뢰지표 보고서**
황호찬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집필
- 02 | **교회 저작권은 생활입니다 교회 저작권 가이드북**
남형두 연세대 법학과 교수 감수
- 03 | **정직한 성도·신뢰받는 교회 만들기 30일 묵상(근간)**
신동식 빛과소금교회 목사 집필
- 04 | **모범적인 재정조례만들기 가이드북(2008년 상반기 발간예정)**
- 05 |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공간개방 가이드북(2008년 상반기 발간예정)**



본 가이드북은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내용을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가이드북의 내용은 의미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 조문을 풀어 쓴 것이므로, 정확한 문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인사말 · 4

제 1장 | 저작권,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 저작권이란? · 11

2. 교회가 저작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김동호 · 14

제 2장 | 교회 저작권은 생활입니다.

1. 교회 예배당의 저작권 풍경(스케치) · 18

2. 저작권 보호의 발생 내용 · 20

3. 저작권 보호 대상 항목별 가이드 · 22

01 소프트웨어 가이드 · 22

02 음원·악보 가이드 · 26

03 이미지·영상 가이드 · 33

4. 기억하기 쉬운 저작권 준수 수칙 4조항 · 38

제 3장 | 이런 상황, 저작권 문제 궁금합니다.

1. FAQ · 42

| 부록 |

1. 저작물 이용 검토 순서도 · 54

2. 교회 소프트웨어 관리 요령 · 56

3. 저작권 길라잡이 저작권 관련 정보 소개 · 58

4. 관련 기사 모음 · 64

5. Index 질문찾기 · 76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소개 · 78



인사말



한국 사회에서 간혹 발생하는 교수들의 논문표절 사건은 전형적인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의 쟁점 사항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란 점은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교회 내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저작권 단속을 받아 왔지만, 교회의 경우 종교기관이라는 명목아래 불법 소프트웨어 및 악보의 무단 복사 등 불법적인 사용이 묵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FTA 체결로 인해 저작권 제도의 강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교회 또한 저작권 문제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최근 교세의 감소와 여러 사건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련으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으며, 또 이러한 신뢰 상실의 다시 교회의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뢰상실을 통한 위기는 단순히 이미지의 손실을 넘어서 전도와 선교의 문

이 좁아진다는 측면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차적인 작은 노력으로 한국 교회가 저작권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의 저작권운동은 단순히 저작권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교회가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의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법의 테두리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업체들과의 협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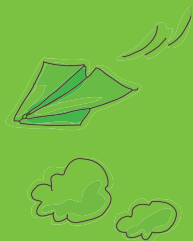
저작권 활용에 대한 이 작은 책자가 한국 교회의 신뢰회복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7년 11월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동호 박은조 손인웅 오정현 이동원

지그.나.진,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 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 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저작권이란 사람의 정신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로서, 독창적인 기술이나 지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여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인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지켜지는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

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나아가 세계 인류 문화유산의 축적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그럼 저작권은 우리를 옥죄는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만 하는 법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법 제1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 조항을 보면 첫번째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라고 나와 있고, 두번째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저작물이란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용자의 편의 또한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만 인정하고, 이용자의 편의에 대해서는 무시한다면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요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저작권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직도 많은 교회들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 음원 등을 공유하고, 성가대 악보를 불법 복사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가는 결국 저작권을 침해한 우리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앞선 언급했듯이 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한 창작자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도 수고를 통해 저작물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2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교회가 저작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김동호 목사 높은뜻승의교회,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공동대표



2005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해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한해가 되게 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의 거짓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요셉과 같이 정직하고 반듯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 • • •

작은 일 하나를 할 때에도 우리가 하는 일 속에 ‘거짓은 없는가?’ ‘정직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교회 재정을 위하여 보다 발전된 재정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단순한 회계 보고가 아닌 결재과정과 금액까지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찬양대의 악보 하나까지도 복사와 복제 없이 정품을 사서 쓰는 일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컴퓨터 소프트

웨어를 정품으로 쓰는 일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대와 찬양팀의 모든 악보를 복사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을 생각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쓰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해 보십시오.

모든 찬양대들이 각자의 악보를 구입하지 않고, 지휘자들과 찬양대 임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여 필요한 악보를 공동구입하고 공동관리를 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예산만으로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면 찬양대원들이 모금함을 들고 로비에 서서 교인들에게 모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써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발버둥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글은 김동호 목사가 높은뜻송의교회에서 2005년 1월 23일에 설교한 〈정직한 자의 방패〉를 부분발췌한 것입니다.

교회저작권은 *신앙*입니다



교회예배당의 저작권풍경

01 소프트웨어



03
이미지·영상



02
음원·악보



저작권보호의 발생내용

≧ 모든 저작권 보호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저작권의 구성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리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말 그대로 저작물을 저작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확보하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재산권과 달리 상속되지 않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저작인격권의 존속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저작자의 사망 후에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 사후 50년이 지난 후에도 누군가 저작물을 심하게 훼손하였다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법적인 제재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해당됩니다. 저작인격권과 달리 저작재산권은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해설하고 전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저작재산권 중 일부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저작권의 보호 기간 (2007. 6. 29 시행중인 현행법의 내용)

우리나라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창작한 때부터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입니다. 보통, 저작권 보호 기간은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 공표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저작물 가운데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저작물이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을 정하여 저작물이 공표된 때부터 50년 동안이며, 저작 인접권을 가진 자 역시 실연이 발생한 해의 그 다음해부터 계산하여 5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는 마지막 저작권자의 사후 50년간 유효합니다.

구 성	내 용	보 호 기 간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상속되지 않음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후손이나 타인에게 양도 가능 저작자 사망 후 50년간 유효
저작인접권	저작 재산권 규정의 상당 부분을 허용함	저작물을 실연한 때부터 50년간 유효
프로그램 저작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개작권, 번역권, 발행권, 대여권	저작물을 공표 한 후 50년간

소프트웨어 가이드

software

01

**정품 소프트웨어 하나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 하나를 구입해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 약정서에서 허용하지 않는 범위를 넘어 설치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02

**컴퓨터 판매자로부터
받은 무상 소프트웨어
서비스**

보통 컴퓨터를(주로 조립PC의 경우) 구입할 때 판매처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OEM 버전(주로 노트북 또는 메이커PC를 구매할 때 따라오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며, 보통 설치된 PC

이외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이라는 인증 없이 소비자에게 인도된 경우,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불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컴퓨터 판매자로부터 받은 무상 소프트웨어인 경우 정식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인지 확인(예, 시리얼번호 확인 등)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에서는

- ☐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대상으로 교회 또는 비영리기관을 위한 저렴한 라이선스 정책개발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 ☐ 또한, 좋은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복시는 안됩니다

03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이것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면, 그것 역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04 개인소유 컴퓨터를
교회업무용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용해야 합니다.

≡ 저작자가 밝힌 목적 이외의 사용은 안됩니다

05 개인용으로 허락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교회에서 사용할 경우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개인용 또는 가정에서만 사용하도록 허락한 소프트웨어를 교회나 회사에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저작물의 사용 방법·목적 등 저작권자의 고유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06 프리웨어 소프트웨어 를 사용할 경우

프리웨어는 일부 제약이 있기도 하지만 누구나 무료로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 개인목적이나 가정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

는 프리웨어 소프트웨어를 교회에서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한 프리웨어,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품을(또는 증명할 자료를)
분실해서는 안됩니다

07 정품 프로그램 분실 후 백업프로그램 사용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4조에는 '정품 프로그램을 멸실, 훼손, 변질이 아닌 '도난·분실'의 경우, 이전에 보관용으로 백업해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도 불법복제 행위로 보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분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08 정품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일체 분실

정품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없다면 불법복제 사용자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정품을 증빙할 몇 가지 자료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 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증명원을 통해서도 정품

사용을 증명 받을 수 없을 경우는 불법 사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평소 세금 계산서, CD케이스, 판매처 연락처 등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음악.악보가이드

Music.musical note

01

정식 출판 성가를
구입하여 복사

정식으로 출판된 성가집을 구입하여 그것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에 침해가 됩니다. 성가집은 꼭 연주하고자 하는 인원수만큼 정식 출판물을 구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시중 서점에서 파는 악보라 할지라도 P.D 곡을 제외한

저작권 표시가 없는 것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여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가집을 구입할 때 반드시 'Copyright ©'가 승인된 출판물을 확인하고 인원수에 맞게 구입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PD(Public Domain)곡은, 너무 오래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곡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곡을 말합니다).

02

시중에 나와 오래되거나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곡의 복사

우리나라는 1987년에 발효된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약인 베른협약에 따라 저작권 보호 기간을 50년으로 산정하여 1957년(2007년 현재를 기준으로 50년간이라 했을 때) 이후 그 저작자가 사망했거나 공표된 저작물은 모두 보호 대상 ▶

복사는 안됩니다

03 비매품이지만 저작권이 있는 곡의 복사 편집

비매품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이 있는 곡을 기도모임이나 성경 공부, 구역 예배 때의 사용을 위해 복사 재편집하는 경우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작품에 있는 저작권자나 작곡자 이름을 확인하거나 저작권 관리그룹을 확인하여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 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나와 오래되었거나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하여 곡을 복사하였다가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저작권 유효 기간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이 유효한 저작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복사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포목적이 아니어도 인터넷에 공유하는 것은 안됩니다

04 구입한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후 인터넷에 공유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자신의 PC에 저장, 또는 MP3플레이어에 담는 것과 같은 사적 이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구입한 CD를 MP3 파일로 전환하여 올리는 것은 배포목적이 아니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05 성가 가사를 복사하거나 또는 인터넷에 공유

단순히 악보나 음원을 복사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 저작권의 경우에는 가사를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 또한 작사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06

**직접 손(컴퓨터프로그램)
으로 그린 악보를 복사
하거나 또는 인터넷에 공유**

악보에 대한 저작권 역시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복사 또는 인터넷에 자신이 손으로 그린 악보를 올리는 행위는 음반을 마음대로 복사해서 나누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단, 성가 저작권을 대행하는 업체 중 하나인 '카

피케어코리아'는 1/2 이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사용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자 또는 저작 대행 업체에 따라 정해놓은 규정이 다르므로 손으로 그린 악보의 공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확인을 거친 후 작업 하셔야 합니다).



비영리(반대급부 없이) 또는
 사내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07

P.D(Public Domain) 곡의 사용

P.D곡은 곡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곡, 또는 작곡자가 일반에게 저작권을 포기한 곡을 말합니다. 따라서 P.D곡은 허락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악보는 사용자가 제작한 것이어야 하며 편

곡된 P.D곡을 사용할 경우에는 편곡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P.D곡을 판별하여 사용하였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P.D곡 승인을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08

구입한 CD를 편집하여 개인적 용도로만 나눠 쓴 경우

자신이 구입한 정식 CD를 사적인 목적으로 복사하여 나눠 쓴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식 CD를 여러 장 복사하여 익명의 사람들에게 다량 배포하거나, 배포목적이 아니어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저작물을 변형해서는 안됩니다

09 저작권이 있는 가사의 편곡

저작권이 있는 곡에 임의로 노랫말을 쓰거나 편곡하는 것, 또는 출판사가 정상적인 출판으로 공급할 수 없는 부분의 편곡이라 할지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가사를 편곡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를 지불하고
 저작 목적에 합당한 사용은 괜찮습니다

10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음악을 링크한 경우

블로그나 카페와 같이 특정 웹 사이트가
 이용자들에게 배경음악을 서비스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음악 저작권자와 저작
 인접권자 각각과 체결하였다면 개별 이용
 자는 그 웹 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홈페
 이지 배경음악을 사용해도 됩니다. 독자

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에도 직접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사
 용료를 지불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음악을 링크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
 니다.

11

찬양 CD를 교회에서
 사용할 경우

정식 판매용 CD를 교회에서 감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단, 공연용으
 로 사용하는 것은 사전 이용 허락을 받아
 야 합니다.

image.video 이미지·영상가이드

01

개인이 직접 구매한
이미지·영상을 복사
하여 공유한 경우

개인이 구매한 이미지나 영상을 사적인
이용에 한해 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
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중의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사·전송
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
회 홈페이지에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을

업로드 시킨다든지, 이미지를 복사하여 주보에 사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02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다른 창작물을
제작 배포(전송)한 경우

예배 광고 또는 설교 영상에 타인의 저작
물을 이용·가공하여 상영할 때 저작자의
동의 없이 행할 경우는 이용자가 임의로
저작물의 복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작물을 *변형*해서는 안됩니다

03 구매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2항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감상용으로 구매한 이미지를 교인들에게 전시한다든지 또는 영상물로 가공하

여 상영하는 경우는 저작자가 밝히 목적 외의 이용으로 모두 저작권을 침해 하는 것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가 밝힌 목적 하에 이용해야 합니다.

04 이미지 중 일부만 잘라내어(트리밍) 사용하는 경우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은 저작인격권으로 저작자에게 보호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타인이 함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일부 내용만을 잘라 내거나, 확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05 단순 링크가 아닌 자료(삽입) 링크

자료를 이용할 사이트 대문이나 게시판에 거는 단순 링크는 파일의 복제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 교회의 자료인 것 처럼 프레임 안에 곧바로 뜨게 하는 경우(framing link, 프레임 링크)나,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 했을 때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 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경우(embedded link, 임베디드 링크)는 독자적으로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링크의 경우도 영업 이익을 해치는 경우는 불법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링크할 경우 전송권 침해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반대급부 없이) 또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06

비영리를 목적으로 **상영**
할 경우(반대급부가 없는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후 “판매용” 영상
저작물을 구입하여 청중이나 관중으로부
터 공개상영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
고 공중에 상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07

설교나 예배시간에
영화나 CF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공정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영화
나 CF의 일부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보조적
인 수단으로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
닌, 전체 CF나 영화를 변형하거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08

기독교 유적지나 자료를 찍은 영상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창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이미지나 영상은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러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유적

지나 자료들을 찍은 영상의 경우는 저작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기억하기 쉬운 저작권 준수 수칙 4조항



이렇게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 1¹ 저작권을 보호하는 정식으로 출간, 판매되는 저작물을 사용합니다.
- 2² 이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복제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하고,
- 3³ 저작자가 밝힌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 4⁴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합니다(반대급부 없이).

이럴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저작권의 합법적인 범위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까다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위의 항목들을 염두해서, 교회의 소프트웨어, 음원·악보, 이미지·영상을 사용합시다!

우리의 제안



☐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컴퓨터, 빔프로젝트, 성가대 가운, 악기 등)는 꼭 필요한 비품이기에 예산을 책정하여 구입하지만, 소프트웨어(PC 프로그램, 악보 등)는 공짜라는 인식으로 인해 예산책정에 소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도 구매해서 사용해야 하는 재산임을 인식하고, 예산책정을 통해 계획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 혹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교회 내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규모 있게 컴퓨터를 구입, 사용하고 컴퓨터 수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한국교회의 80%가 중소교회인 현실에서 교회들이 소프트웨어 적인 비품들을 구매하는데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안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FAQ
이런상황,
저작권문제
궁금합니다



FAQ

FAQ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질문의 항목들을 구분하였습니다.

먼저는, 저작권 사용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들을 범주로 항목들을 나누었습니다. 가령 저작권 법령·복사·이용과 같은 사례 전반에 대해 알고 싶을 때는 **제목**을 보고 찾으세요.

특별히, **소프트웨어·음원·이미지** 중 한 가지 항목과 관련한 저작권 질문들을 보고 싶을 때는 질문 앞의 **그림 이미지**를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어문 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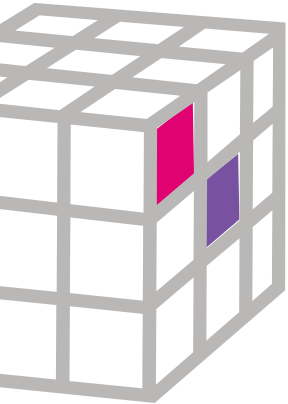
음악 저작권



영상·이미지 저작권

저작권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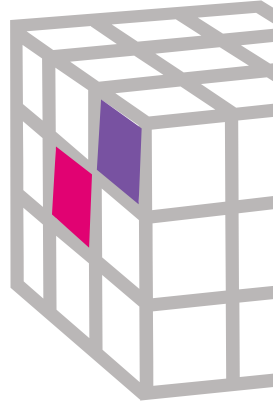
이



(저작권 보호 기간) 저작권자 사후 50년이 넘은 곡을 사용하거나, 또는 출판된지 50년이 넘은 성가집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으로 문제가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저작물은 누구든지 반대급부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저작물이 2차적으로 작성(편곡, 개작)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저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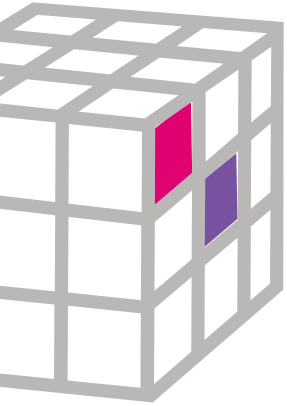
02 (저작권 침해 범위) 저작권에 침해되는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요?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전자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후자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작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학교교육목적에 이용하는 경우,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 권 보호 기간의 소멸을 사용자가 임의로 판단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 저작권의 경우 작곡자, 작사자, 음반제작자, 실연자 등이 모두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작곡자 사후 50년이라 하여 자유롭게 사용하였다가 작사자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저작물은 50년이 지났으나 저작권자가 생존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보호 기간을 확실히 확인한 후 저작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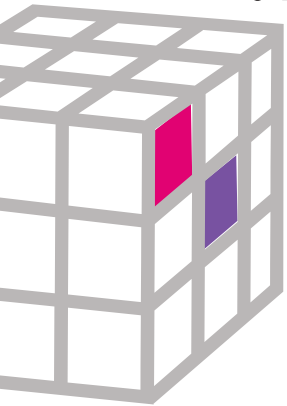
03



(저작권 침해 처벌) 저작권에 위배될 때 예상되는 처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저작재산권상 '권리 침해죄'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저작권 침해물건임을 알면서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저작자의 성명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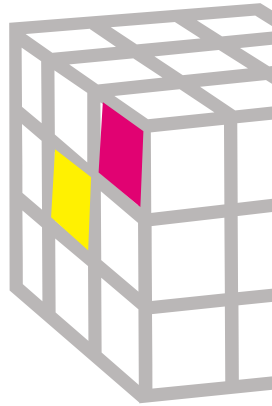
(저작물 비영리 사용) 교회의 사용 목적이 모두 비영리가 아닌가요? 비영리 목적이라면 저작권과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교회의 사용 목적이 모두 비영리라 할 수는 없습니다. 공연 관람료 또는 그것을 통해 제작된 저작물의 판매료, 공연을 시연한 사람이 보수를 받고 한 경우라면 모두 영리적인 목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영리와 비영리의 목적을 불문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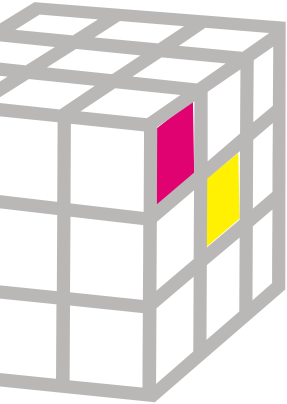
05 (어문 저작물 복사) 성경공부를 할 때, 교재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 날 공부할 부분만 복사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설사 정식 출판물을 본인이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공중용 복사기’를 이용할 경우입니다. ‘공중용 복사기’란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복사기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복사기가 공중용 복사기에 해당됩니다. 이 복사기를 사용했을 경우,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공중복사기를 사용할 경우 개별 저작물 분량의 10%에 한해 복사 사용이 가능합니다(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계약이 체결된 공중용 복사기의 구분은 복사기에 부착된 저작권 인정 스티커로 체결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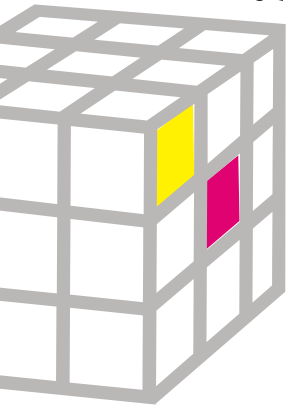
06



(음악 저작물 복사) 개척교회의 경우 찬양대 악보 복사를 할 경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운받은 것을 성가대원들에게 복사하거나, 책 한권을 사서 복사하는 것도 저작권에 위배되는가요?

네, 정식 출판물의 이용 아닌 이외의 모든 목적으로 이용되는 성가 악보는 모두 불법입니다. 더욱이 시중 서점에서 판매하는 악보라 할지라도 저작권 표시가 없는 것은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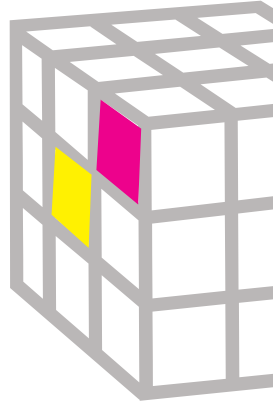
(음악 저작물 복사) 인터넷에서 노래를 (유료)다운 받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 사용하여 다른 컴퓨터에 저장해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에 위배되는가요?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이것을 공공연한 목적으로 유포·이용할 경우 복사와 같은 행위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노래는 개인 감상을 전제로 다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달리 이용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08 (업무 참고용 복사) 교회 직원들이 업무 참고를 위해 사용할 자료를 복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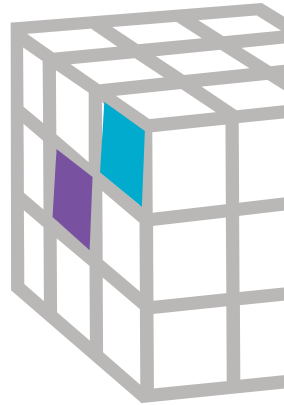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법제에서는 ‘행정업무를 위해 내부용’ 복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는 공적인 행정 업무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일부 내용을 업무상 참고하기 위해 복사하더라도 이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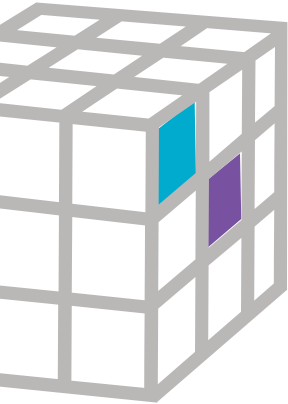
저작물 사용과 허락

09 (저작물 사용 허락) 아무리 저작자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자가 이미 사망했고, 저작권의 시효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 후손을 찾을 길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후손 대신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저작물 사용 허락) 복사 허락을 허락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저작자 또는 출판사, 위임된 저작권신탁단체, 에이전트와 같이 저작권을 보유, 저작권을 법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 저작물 사용을 허락받아야 합니다(본 가이드북 부록의 저작권 관련 문의처 소개 참고).

11



(소프트웨어 사용) 정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반드시 한 컴퓨터(하드웨어)당 하나씩 설치해야 하나요? 정식 소프트웨어를 사서 몇 대의 컴퓨터 정도는 공유할 수 없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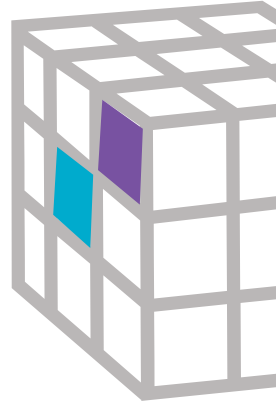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밖에서는 소프트웨어 한 카피(copy) 당 반드시 한 대의 하드웨어에 설치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소프트웨어를 샀을 때 함께 첨부되는 약정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지라도 그것을 여러 컴퓨터에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다만, 소프트웨어 업체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다량 구입하는 경우 협약을 통해 여러 컴퓨터에 공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 (음악 저작물 사용) 찬양 CD를 사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인원에 맞게 사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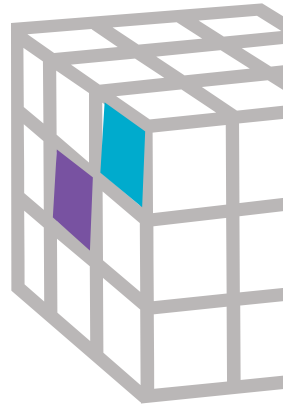
정식 판매용 찬양 CD의 경우 함께 듣거나, 빌려주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이 있는 CD를 무단 복사·배포 할 경우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감상용 CD를 음원이나 공연용으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별도로 CD에 명시되어 있는 판매처를 통해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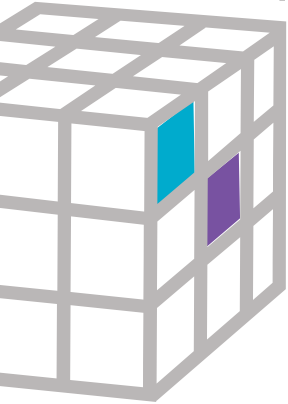


13 (음악 저작물 사용 허락) 찬양집을 사용할 때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인원수에 맞게 구입하여 정식 출간물을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명시되지 않은 곡이나 출판이 절판된 찬양집을 복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도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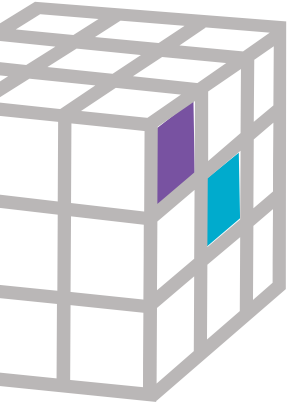
14



(**유료 저작물 사용 허락**) 인터넷상에서 돈을 지불하고 다운을 받는 것은 모두가 다 정상적인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있는데요?

저작권 사용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인터넷상에서 다운 받는 것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맺어진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보다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상 타결 내용대로라면 인터넷에서 스트리밍(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등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영화·음악을 듣기가 어려워지고, 이용 요금도 사용 빈도에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15



(**저작물 인용 허락**) 예배시간에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화나 CF의 일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저자의 사전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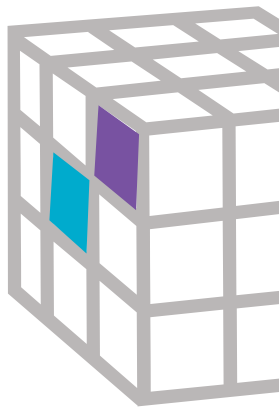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영화나 CF의 지극히 적은 부분을 설교나 예배 때에 사용하는 것은 '인용'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인용한 내용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16

(저작물 비평) 기독교 관련 서적이나, 음반에 관해 교회 홈페이지에 소개 하고 싶습니다. 이때 그 저작물의 이미지나 글을 함께 소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 경우는 비평에 해당합니다. 비평을 하면서 그 내용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사진이나 글, 홍보전단지 등을 보조적인 자료로 쓰는 것은 적법한 인용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때에 사용 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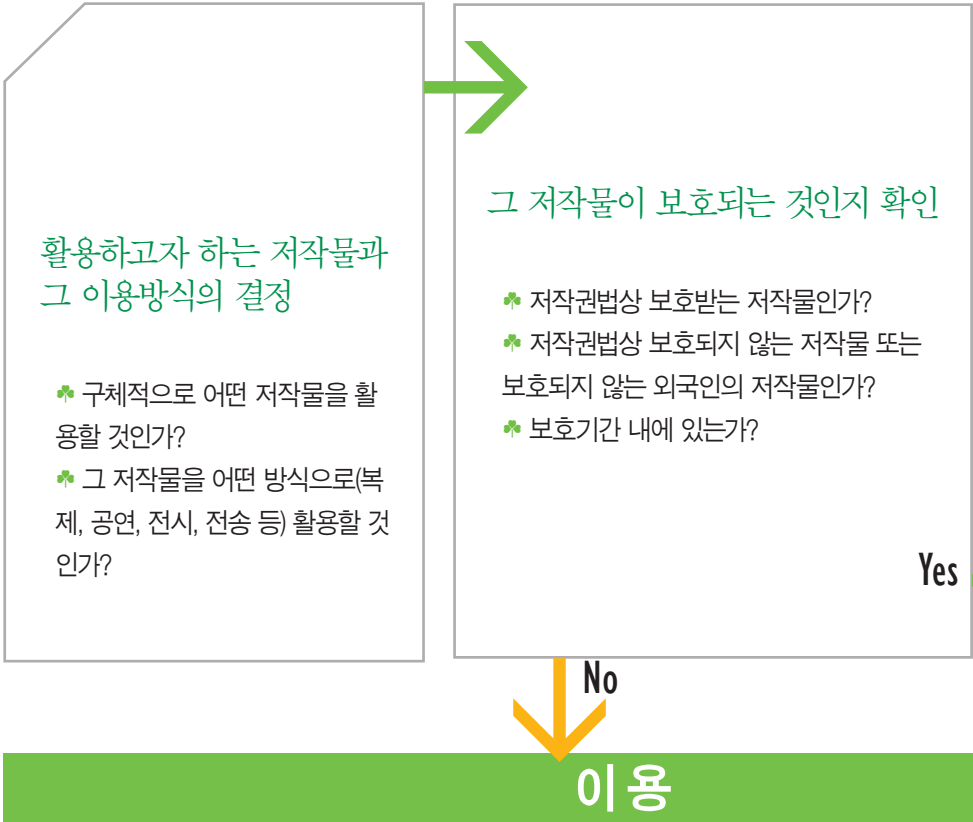


- ❶ 저작물 이용 검토 순서도
- ❷ 교회 소프트웨어 관리 요령
- ❸ 저작권 길라잡이 저작권 관련 정보 소개
- ❹ 관련 기사 모음
- ❺ Index 질문찾기 저작권 가이드 인덱스

📦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소개

저작물 이용검토순서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과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막막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음의 순서도에 따라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처 |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저작권위원회, 2007)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법상 저작권재산권
제한에 해당되는지 확인

- ❖ 저작물의 표현이 아니라 단순히 아이디어만을 이용하는 것인가?
- ❖ 교육목적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가?
- ❖ 시험목적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가?
- ❖ 공정한 인용에 해당하는가?
- ❖ 도서관 등을 위한 이용에 해당하는가?
-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가?

Yes

저작물 이용허락 협의

- ❖ 저작권자와의 직접 협의
- ❖ 저작권위탁관리업체를 통한 이용허락
- ❖ 신탁관리단체를 통한 이용허락
- ❖ 대리중개업체를 통한 이용허락

No

이용

저작물은 이용허락 조건에 맞게 이용하여야 하며, 저작권재산권 제한에 해당되어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표시 등을 하여야 합니다.

교회 소프트웨어 관리요령

1단계 준비단계

소프트웨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관 내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소프트웨어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관 내 모든 컴퓨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교회 내 소프트웨어관리에 대한 체계를 정리합니다.

2단계 설치· 조사단계

각 PC의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교회 내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을 조사하여 보유중인 라이선스와 대조하여 정품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3단계 실행· 확인단계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소프트웨어는 삭제하고,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소프트웨어의 이름과 수량을 파악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가 삭제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전부 구입되면 현재 교회 내 개인별·소프트웨어별 설치 현황표를 작성하여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부서에 배치하고 종합적인 소프트웨어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대장을 만들어 정품을 구입했다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도록 합니다.

저작권길라잡이 **저작권 관련 정보 소개**

* 소개는 가나다 순입니다



저작권법 및 상담 관련

- *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www.mct.go.kr
- * 저작권보호센터 www.cleancopyright.or.kr
- * 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서비스 counsel.copyright.or.kr
-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www.copycle.or.kr
-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www.kofoco.or.kr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www.kiscom.or.kr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www.socop.or.kr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www.spc.or.kr

음원·악보 저작권 관련



- * 선민음악 www.sunmin.co.kr
- * 카피케어코리아 www.copycarekorea.com
- *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www.fokapo.or.kr
-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komca.or.kr
-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www.kapp.or.kr

이미지·영상·출판 저작권 관련



- * 대한출판문화협회 www.kpa21.or.kr
- * 영화진흥위원회 고객센터 www.kofic.or.kr
- * 한국기독교출판협회 www.kcpa.or.kr
- *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 www.sack.or.kr
- * 한국사진작가협회 www.pask.net
- * 한국영상산업협회 www.kmva.or.kr

참고웹페이지



문화관광부 |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자

http://www.mct.go.kr/open_content/copyright/anxiety/anxiety01.htm

문화관광부 |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

http://www.mct.go.kr/open_content/copyright/faq/faq01.htm

문화관광부 | 저작권일반상식

http://www.mct.go.kr/open_content/copyright/knowledge/know01.htm

저작권보호센터 | 만화로 보는 쉬운 저작권이야기

<http://www.cleancopyright.or.kr>

저작권위원회 | 법령/조약

<http://www.copyright.or.kr>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등상담서비스 | 자주 이용하는 자동 상담

http://counsel.copyright.or.kr/autoCounsel/popular_List.asp?nWhere=3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온라인상담

http://www.socop.or.kr/07participation/07participation_11_02.jsp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 상담실

<http://www.copycle.or.kr/bbs/qna.asp>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저작권 상담실

<http://www.spc.or.kr>

선민음악 | 저작권의 기본 이해

http://www.isunmin.com/contents_list.asp?val=3&bn=column

카피케어코리아 | FAQ

http://www.copycarekorea.com/05_02.asp

참고문헌



문화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길라잡이』 2007.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 2005.

문화관광부, 저작권보호센터

문화관광부, 『저작권,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2005. 문화관광부

저작권보호센터, 『카피& 페이스트』 2005. 문화관광부, 저작권보호센터

김기태, 『유비쿼터스시대의 저작권 상식 100선』 2005. KT문화재단

김기태, 『한국저작권법 개설』 2005. 이채

김원석,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 2006. 은행나무

이재철, 『만화 그리고 저작권』 2004. 세창미디어

언론기사모음 01



국민일보 2007년 2월 11일

한·미 FTA 교계 영향(상) 지적재산권

... 복음성가 악보 사용료 '불씨'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다음달 내 합의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서비스 산업 개방을 골자로 하는 FTA는 교회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 교회는 물론이고 대형교단이나 연합기관조차 이에 대한 검토나 대비는 전혀 없다. 교회 활동과 신학교육 등에서 FTA가 한국교회에 끼칠 영향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FTA요?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한·미 FTA가 교회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교계 관계자들은 이같이 반문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O)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인 교회들은 비정규직과 농촌 문제 등 주로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교계 내에서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FTA 협상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협상 내용 중에는 교회 활동과 직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면서 “교회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분야가 지적 재산권이다

성가대와 찬양팀이 부르는 곡들은 물론이고 교회에서 책자나 팸플릿 형태로 악보를 복사해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지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 교회 홈페이지의 배경음악과 그림,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대형화면을 통한 기사 전달과 동영상 상영도 모두 지적 재산권 분야의 규제 대상이다.

음악과 동영상은 현재의 국내 저작권법으로도 단속 대상이지만, 그동안 교회는 비영리 기관이면서 관례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점, 저작권자도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점 때문에 규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 카피케어코리아 오한나 대표는 “하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기독교음악 저작권업체인 기독교저작권협회(CCLI)가 한국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끼리니까 봐주는 식은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성가대가 사용하기 위해 악보를 몇십장씩 복사할 때도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교회의 경우 CCLI를 통해 연간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예배나 선교 활동 중에 사용하는 음악은 대부분 무료로 쓸 수 있지만, 성가대나 찬양팀의 활동이나 교회 내 비영리 출판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숫자에 따라 가격을 매기고 있다. 1000부 정도를 복사할 경우 사용료는 2만원 가량 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국내에도 크리스천저작권협회가 있고 카피케어와 같은 대행사들이 있지만, 아직은 교회가 일일이 저작권을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나마 이런 정도로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교회는 극소수 대형교회에 불과하다. 한·미 FTA를 앞두고도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자칫 불법을 행하는 단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제약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를 계기로 국내



찬양팀들의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 국내 기독교음악인들의 창작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김지방, 박재찬 기자 fattykim@kmib.co.kr

언론기사모음 02



교회연합신문 2007년 7월 12일

저작권 소송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추세, 찬송가도 로얄티 지불

한·미 FTA 체결 이후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기독교계도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지고 있다. 그동안 저작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 불법복제 문화가 횡행했던 한국교회도 이대로 간다면 각종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더 연장하게 된다. 정부의 피해액 예상은 연간 1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저작물의 불법복제, 전송 등을 허용하는 인터넷사이트는 폐쇄될 수 있으며 영화관에서 전송을 목적으로 화면을 촬영할 경우 도촬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가의 서적복사, 무단인쇄 등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계에서는 그동안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거의 전무했던 게 사실이다. 어떠한 불법복제도 복음과 관련한 목적이라면 허용되는 분위기였다.

한 예로 교회 성가대나 찬양팀이 출판사에서 나온 악보를 아무 거리낌 없이 복사하여 쓰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행태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차후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교회도 대비에 나서야 한다.

최근 한국찬송가공회(공동대표 이광선 황승기 목사)는 저작권과 관련, 200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했다. 지난해 출판된 '21세기찬송가'도 아닌 '통일찬송가'에 소급 적용한 저작권 비용이다.

공회가 지급한 사용료는 통일찬송가에 수록된 11곡으로 저작권관리 대행업체인 카피케어코리아측(대표 오한나)이 요구한 것이다. 카피케어코리아는

지난 1월 공회측에 공문을 보내 “저작권이 살아있는 곡에 대해 별도의 계약 없이 사용한 것이 발견됐다”며 “지난 한해만 20만부 발간한 것을 기준으로 4천만 원의 로열티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공회측과 카피케어측은 협의를 통해 로열티를 2천만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카피케어측은 21세기찬송가에 수록된 20곡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회측은 현재 카피케어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번 달 안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에 만들어진 ‘카피케어코리아’는 외국찬양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국내 찬양 사역 단체가 외국곡을 번역하는 것을 승인하는 단체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외국곡의 80% 이상을 관리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교계는 이번 찬송가 저작권 문제를 계기로 시급히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2, 제3의 카피케어가 등장, 로열티를 요구할 경우 막대한 비용지불은 물론 최악의 경우, 찬송가 재판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문제는 비단 음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 꼼꼼히 들여다보면 저작권 문제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교회홈페이지의 배경음악과 각종 동영상, 행정업무 등에 쓰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등 이 모든 것이 저작권과 연관이 있다.

실제로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들이 출판사, 출력소 등에서 흔히 쓰는 편집 프로그램 복제물 적발에 나서고 있어 급히 정품으로 교체하는 소동이 일고 있다. 또한 개인 혹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윈도우 등 소프트웨어의 절반 이상이 복제물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업계의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저작권 강화에 대한 교회의 대책으로 소프트웨어의 공급자인 저작권사측에서 교회가 비영리단체임을 감안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거나 노회나 교단 차원에서 저렴하게 공동구매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2007. 7. 12. 교회연합신문 **남원준** 기자

언론기사모음 03



기독교타임즈 2007년 5월 29일

교회서 성가 악보 복사도 ‘도적질’?

정품 SW 사용·악보 구입 교회 20% 미만…
‘지적 저작권’ 이해 절실

꽤 값은 내면서 악보 사용료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는 악보와 음반 등 ‘크리스찬 음악’일 것이다. 하지만 찬양대에서 매주 악보를 복사해 사용하면서도 이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각 교회 홈페이지마

다 배경 음악은 가지각색 다양하지만 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는 교회는 과연 몇 곳이나 될까.

검 한통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값을 지불해야 하고,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어떤 물건이든 사용에 따른 값이 매겨진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의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과 교회신뢰네트워크는 지난 23일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한국교회와 저작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2000년부터 저작권자 사이에서 크리스찬 ‘지적 저작권’이 대두되어 왔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묵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논문 표절 사건과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관행·성역으로 무마...창작 욕구 찬물

“교회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는 더 이상 ‘성역’으로 미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 관행을 타파하고 저작권자들의 창작 욕구를 돕는데 교회가 나설 때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이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찬양대가 사용하는 성가곡, 교회 홈페이지의 배경음악과 각종 동영상, 행정 업무에 쓰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모두 지적 재산권과 관련돼 있다. 모든 자료는 저작

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소프트웨어도 정품 사용이 원칙이지만, 한국교회의 80%가 중소교회인 현실에서는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 36개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교회의 저작권 사용현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프트웨어(SW) 구입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교회는 19.4%로 나타났고, 정품 SW를 사용한다고 교회는 36%에 그쳤다.

또 찬양대 악보의 경우 대도시 교회일수록(65.2%) 대형교회일수록(100%) 전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지휘사용 악보만 구입한다’는 교회도 무려 31%에 달해 많은 교회들이 아직 악보 구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나타냈다.

구입 절차 간소화·비용 합리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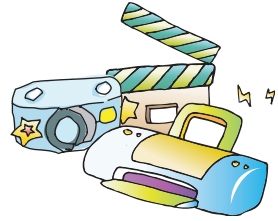
이날 토론회에서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국교회와 저작권문제’를 주제로 유형물 절도와 저작권 침해를 빗대어 “십계명 가운데 제8계명인 ‘도적질하지 말찌니라’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엔진인 지식산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에서부터 지켜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김동현 사무국장(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은 “저작권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부족과 비용부담, 저작권 처리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회신뢰네트워크는 “한국 교회에 저작권 준수 운동을 확산시켜 교회의 정직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면서 “나이가 비싼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낮추고 악보, 음반 등의 저작권 사용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혜창 팀장(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은 교회 내 불법 SW사용을 지적하며 "SW의 공급자인 저작권자 측에서 교회가 비영리 단체인 점을 감안해 저렴한 가격으로 SW를 제공하거나 교단 차원에서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크리스찬음악저작권협회 초대이사를 역임한 황병구 씨는 "찬송가나 찬양곡의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행사를 통해 이득, 즉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필두로 교회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적법한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은 뜻을 같이 했다.

‘창작의 고통’이란 말은 전 세계에서 통용될 정도로 일반화됐다. 그만큼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뜻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명목하에 묵고되어 왔던 지적 저작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교회에 절실한 때이다.

윤선주 기자 sun@kmctimes.com

Index 질문 찾기 | 저작권가이드인덱스



I. 소프트웨어 가이드

01 정품 소프트웨어 하나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 한 경우.....	22
02 컴퓨터 판매자로부터 받은 무상 소프트웨어 서비스	22
03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23
04 개인소유 컴퓨터를 교회업무용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경우.....	23
05 개인용으로 허락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교회에서 사용할 경우	24
06 프리웨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24
07 정품 프로그램 분실 후 백업프로그램 사용	25
08 정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일체 분실	25

II. 음원·악보 가이드

01 정식 출판 성가를 구입하여 복사	26
02 시중에 나와 오래되거나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곡의 복사.....	26
03 비매품이지만 저작권이 있는 곡의 복사 편집	27
04 구입한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후 인터넷에 공유.....	28
05 성가 가사를 복사하거나 또는 인터넷에 공유.....	28
06 직접 손(컴퓨터프로그램)으로 그린 악보를 복사 하거나 또는 인터넷에 공유.....	29
07 P.D(Public Domain)곡의 사용	30
08 구입한 CD를 편집하여 개인적 용도로만 나눠 쓴 경우	30
09 저작권이 있는 가사의 편곡	31
10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음악을 링크한 경우.....	32
11 찬양 CD를 교회에서 사용할 경우	32

III. 이미지·영상 가이드

01 개인이 직접 구매한 이미지·영상을 복사하여 공유한 경우.....	33
02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다른 창작물을 제작 배포(전송)한 경우	33
03 구매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4
04 이미지 중 일부만 잘라내기(트리밍) 사용하는 경우	34
05 단순 링크가 아닌 자료(삽입) 링크	35
06 비영리를 목적으로 상영할 경우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	36

07 설교나 예배시간에 영화나 CF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36
08 기록요 유적지나 자료를 찍은 영상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37

FAQ Index

01 저작권자 사후 50년이 넘는 곡을 사용하거나, 또는 출판 된지 50년이 넘는 성가집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으로 문제가 되나요?	42
02 저작권에 침해되는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요?	43
03 저작권에 위배될 때 예상되는 처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44
04 교회의 사용 목적이 모두 비영리가 아닌가요? 비영리 목적이라면 저작권과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44
05 성경공부를 할 때, 교재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 날 공부할 부분만 복사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45
06 개척교회의 경우 찬양대 악보 복사를 할 경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운받은 것을 성가대원들에게 복사하거나, 책 한권을 사서 복사하는 것도 저작권에 위배되는가요?	46
07 인터넷에서 노래를 (유료)다운 받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 사용하여 다른 컴퓨터에 저장해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에 위배되는가요?	46
08 교회 직원들이 업무 참고를 위해 사용할 자료를 복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47
09 아무리 저작자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7
10 복사 허락을 허락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48
11 정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반드시 한 컴퓨터(하드웨어)당 하나씩 설치해야 하나요? 정식 소프트웨어를 사서 몇 대의 컴퓨터 정도는 공유 할 수 없나요?	48
12 찬양 CD를 사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인원에 맞게 사야 하나요?	49
13 찬양집을 사용할 때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49
14 인터넷상에서 돈을 지불하고 다운을 받는 것은 모두가 다 정상적인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있는데요?	50
15 예배시간에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화나 CF의 일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저자의 사전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50
16 기록관련 서적이나, 음반에 관해 교회 홈페이지에 소개 하고 싶습니다. 이때 그 저작물의 이미지나 글을 함께 소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50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는 한국교회의 신뢰성증진을 위한 서포터스가 되겠습니다

| 소개 |

- ☐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는 교회의 윤리성과 공공성 회복을 통해 성도와 한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섬기고자 합니다.
- ☐ 신뢰성 증진을 돕기 위한 교회신뢰지표 개발 및 컨설팅, 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임파워먼트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회와 성도가 우리사회의 신뢰성 증진을 주도해 나가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 주요사업 |

1. 한국교회신뢰지표 측정 및 결과분석 서비스

- ☐ 신뢰성 제고가 교회의 건전성 확립 및 교회발전에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신뢰성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그에 의한 신뢰성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현재 개발 완료)

2. 임파워먼트 컨설팅 및 매뉴얼 제공

- ☐ 한국교회신뢰지표 측정 후 지표의 4가지 항목(비전과 리더십, 조직운영, 사회적책임, 성도의 삶)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매뉴얼 보급(교회신뢰회복시리즈)

3. 교회저작권 인식개선운동(가이드북 보급, 저작권협정서비스)

| 주요일정 |

- 📦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 5월 18(금), 발제| 임성빈 교수
- 📦 “한국교회와 저작권을 생각한다” 토론회 : 5월 23일(수), 발제| 남형두 교수
- 📦 “교회신뢰지표 공개 공청회” 7월 2일(월), 발제| 황호찬 교수
- 📦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목회자 간담회” 7월 12일(목), 좌장| 박은조 목사
- 📦 “공공신학(Public Theology) 전문가 집담회 :
1차 : 7월 23일(월) / 좌장| 임성빈 교수 / 2차 : 10월 6일(토) / 3차 : 12월 3일(월)
- 📦 “한국교회신뢰지표 개발·보급” 10월 중순, 2008년
- 📦 “교회 저작권 가이드북 제작 및 보급” 11월 하순
- 📦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만들기 30일 묵상 교재 제작 및 보급” 12월 하순

| 조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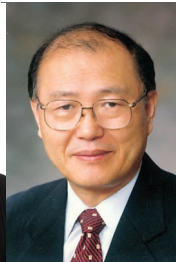
📦 공동/대/표



김동호 목사
(높은뜻승의교회)



박은조 목사
(분당샘물교회)



손인웅 목사
(덕수교회)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운동에 참여하실 교회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조재호 부장 02-794-6200 / ctn@hanmail.net

협력기관 | 기독교경영연구원, 바른교회아카데미,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Young 2080

감수 | 남형두 교수 연세대 법학과

남형두 교수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저작권법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 법과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교회저작권은 생활입니다 교회저작권가이드북 교회신뢰회복시리즈 2권 |

발행일 | 2007년 11월 26일

발행인 | 김동호 박은조 손인웅 오정현 이동원

편집 | 조제호, 배은경

디자인 | 김문

발행처 |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 | 02-794-6200 Fax | 02-790-8585

E-mail | ctn@hanmail.net

Homepage | www.trustchurch.net, www.cemk.org



본 가이드북은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내용을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사전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